


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

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



무엇이 달라졌나요?

• 변경 전	영업전 1회	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
• 변경 후	영업전 1회 + 2년에 1회	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이하
• 교육대상	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1명 이상	
• 교육시기	2016.01.20 이전 교육이수자 : 2018.01.20 2016.01.21 이후 교육이수자 :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	

• 시행일 : 2016년 1월 21일

※문의 |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(02-2100-0850) 또는 관할 소방서





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

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**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** 받아야 합니다.



다중이용업소 무엇이 달라졌나요? 시행일 : 2016년 1월 21일

• 변경 전

- 교육은 영업전 1회
-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

• 변경 후

- 교육은 영업전 1회 + 2년에 1회
-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이하

• 교육대상

-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**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1명 이상**

• 교육시기

- 2016.01.20 이전 교육이수자 : 2018.01.20
- 2016.01.21 이후 교육이수자 :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

※ 문의 |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(02-2100-0850) 또는 관할 소방서

